

방송광고 판매대행 약관

(매체사)

2014. 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방송광고 판매대행 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방송광고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렙법'이라 합니다)에 의거 방송법에 의한 국내 각 방송사업자(이하 '매체사'라 합니다)와 방송광고판매를 대행하는 주식회사 미디어렙에이(이하 '미디어렙'이라 합니다)간에 방송광고 판매대행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신고, 변경 및 적용 등)

- ①이 약관은 미디어렙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한 것이고,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합니다.
- ②미디어렙은 이 약관을 당사 홈페이지(<http://www.mediarepa.com>)에 게시하고, 매체사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미디어렙이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 홈페이지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한 내용을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까지 공지합니다. 매체사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통지하며, 변경 약관을 공지한 후 7일 이내에 매체사의 명시적인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매체사가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④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매체사는 방송광고판매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매체사가 변경 후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미디어렙은 방송광고판매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이 약관은 매체사로부터 위탁받은 방송광고의 판매대행업무에 적용하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기타 관련 고시 및 '방송광고 판매대행 계약서'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 ⑥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과 미디어렙법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 고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장 방송광고 판매대행 계약 체결

제3조 (계약체결)

- ①미디어렙과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원하는 매체사는 '방송광고판매대행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②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매체사는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미디어렙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의 기재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

시 미디어랩에 변경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분),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분),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2.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최근 3개월내 발급분),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분),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3.제1호 및 제2호외의 방송사업자 :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제4조 (계약기간 등)

본 약관 제3조 제1항에 따라 방송광고 판매대행 계약서를 작성한 매체사의 계약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작성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미디어랩이나 매체사가 계약조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때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연장 됩니다. 단, 방송광고 판매대행 계약서에 그 유효기간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3장 방송광고

제5조 (방송광고요금 등의 책정)

①방송광고요금(이하 '광고료'라 합니다)과 방송광고시급(이하 '시급'이라 합니다)은 매체사가 제시하여 미디어랩과 매체사간 합의하여 결정을 합니다.

②미디어랩은 제1항의 합의 결과에 따라 '방송광고요금표'를 확정하여 미디어랩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합니다.

제6조 (방송광고요금 및 시급)

①방송광고가 복수의 시급에 걸쳐 방송되는 경우, 토막광고와 자막광고는 높은 쪽의 시급을 적용합니다.

②방송광고가 다른 시급으로 변경되어 방송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시급을 적용합니다. 단, 가상광고는 시급이 변경되어 방송된 경우에도 당초 청약한 광고료를 적용합니다.

1.방송프로그램의 전후 방송프로그램광고가 각각 청약당시 방송 프로그램 편성표보다 낮은 시급으로 변경되어 방송된 경우, 광고료는 변경된 시간대의 기본 방송프로그램 광고료에 준하여 재산정합니다. 단, 높은 시급으로 변경 방송된 경우에는 당초 청약한 광고료를 적용합니다.

2.토막광고 및 자막광고가 낮은 시급으로 10분 이상 변경되어 방송된 경우에는 실

제 방송된 시급의 광고요금을 적용합니다. 단, 시급이 2시급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최종 변경된 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3.제1호의 시급변경을 동반한 시보광고의 시급변경에 따른 광고료는 변경된 시간대의 기본 방송프로그램에 준하여 산정합니다.

제7조 (방송프로그램의 변경)

①매체사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와 공공적, 사회적 필요 및 매체사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기본 방송프로그램(정규방송)이 변경된 때에는 즉시 미디어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의 시간변경으로 인한 광고료는 본 약관 제6조를 준용합니다. 단, 간접광고료는 당초 청약한 간접광고료를 적용합니다.

제8조 (판매방식)

①미디어렐은 방송광고 판매대행에 있어서 특정 매체사의 영향력을 배제하며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합니다.

②미디어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판매방식을 운영하며 관계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에서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판매방식의 운영도 가능합니다.

1.복수의 방송광고를 하나의 상품으로 구성하여 판매하는 패키지 판매방식

2.방송광고판매기간에 따른 판매방식

가. 장기물판매 : 6개월 이상 단위 판매

나. 정기물 판매 : 1~3개월 단위 판매

다. 임시물 판매 : 1개월 이하 단위 월중 수시 판매

3.미디어렐이 사전 지정한 방송광고를 보다 높은 광고료를 제시하는 방송광고 청약자에게 판매하는 선매(Preemption) 판매방식

4.방송광고 청약자가 방송프로그램광고 순서지정 대가를 부담하기로 하고 사전에 순서를 지정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높은 지정금액 순으로 미디어렐이 방송프로그램광고의 방송순서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프로그램광고 순서지정 판매방식

5.시청률요인, 방송광고시장의 수요, 공급요인 등을 고려하여 방송광고 청약자에게 시청률, 청약횟수 등을 보장하거나 광고료에 따라 청약횟수 등을 제시하는 판매방식

③미디어렐은 관계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방송광고 판매방식의 변경, 폐기도 가능합니다.

④미디어렐은 방송광고 판매방식에 따라 방송광고요금표상 광고료의 할인, 할증 및 무상의 방송광고시간 추가제공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⑤제2항에 따른 판매방식 및 그 변경이나 폐지, 제3항에 따른 광고료의 할인, 할증 및 무상의 방송광고시간 추가제공 등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로 통보하거나 방송광고 청약자와 협의하여 확정된 최종 운행안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방송광고 결합판매)

미디어랩은 방송광고 판매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필요할 경우 방송광고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한 각 매체사 상호간에 방송광고를 결합(패키지판매 포함)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광고판매의 제한)

미디어랩은 광고주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약관 제8조의 광고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개편)

매체사는 방송프로그램의 개편이 확정되면 미디어랩에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최소 7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매체사의 사정으로 개편 7일전까지 개편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4장 방송광고 운행

제12조 (운행)

- ①미디어랩이 판매대행하는 방송광고가 관련법을 준수하는 지 여부를 심의하고 확인하는 책임은 매체사에 있습니다.
- ②미디어랩은 매체사가 사전 제공한 방송편성일정에 따라 방송광고 개시 전에 방송광고의 운행의뢰서(최종 확정된 방송광고 운행안으로 대체가능 합니다)를 방송광고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매체사에게 전달합니다. 다만, 방송광고판매시스템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미디어랩은 전화, 팩스, 전자메일 등을 통하여 매체사와 협의하여 운행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 ③매체사는 미디어랩이 제2항에 따라 운행의뢰한 내용대로 방송광고를 방송합니다.

제13조 (운행불일치)

- ①미디어랩의 판매대행업무 수행 중 미디어랩 또는 매체사의 착오로 방송광고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방송되지 아니한 때(광고소재 착오, 방송광고기간 착오, 구 광고소재 사용, 초수 잘림, 비디오 및 오디오 불량, 시간대 착오, 법적허용량 초과 방송광고물 등)에는 방송광고 청약자에게 그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광고료를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단, 운행불일치에 대하여 미디어랩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매체사는 광고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미디어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방송광고 청약자의 사정으로 방송광고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방송되었을 때에는 광고료를 방송광고 청약자가 부담합니다.
- ③방송광고 청약자가 청약하지 않은 방송광고가 방송된 경우에는 광고료를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방송광고 소재)

①매체사는 미디어렙이 별도의 방송광고소재전송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코바코'라 합니다)의 광고소재전송시스템(이하 'KODEX'라 합니다)을 이용하여 방송광고 소재를 제공 받거나 방송광고 청약자로부터 방송광고소재 테이프를 직접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②방송광고 소재에 관한 제반사항(소재수령, 심의필 여부, 관련법 준수 여부 등) 확인은 매체사에서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디어렙은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이 없습니다.

③매체사와 미디어렙은 KODEX를 이용함에 있어 코바코의 해당 약관에 따라 이용합니다.

제15조 (판매현황 송부)

미디어렙은 당해 월간 방송광고 판매현황을 익월 10일까지 매체사에게 송부합니다.

제5장 광고료, 수탁수수료 정산 및 지급

제16조 (수탁수수료)

매체사는 미디어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방송광고료의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19이내의 범위에서 미디어렙과 각 매체사별로 방송광고 판매대행 계약에서 정한 수탁수수료를 미디어렙에 지급합니다.

제17조 (광고료 지급 및 수탁수수료 정산)

①미디어렙은 당해 월 판매한 방송 광고료를 현금 또는 3개월 이내에 현금화 될 수 있는 은행도어음, 미디어렙이 발행한 어음 또는 전자결제(외담대등) 방식으로 익월 말일까지 매체사에게 지급합니다. 단, 미디어렙과 매체사간 상호 합의를 통해 3개월을 초과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항은 각 매체사별 방송광고 판매대행 계약에 따릅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약관 제16조에 따라 매체사가 미디어렙에 지급하여야 할 수탁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매체사에 입금합니다.

제6장 간접광고에 관한 특례

제18조 (간접광고의 특례)

간접광고 영업대행에 관한 업무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본 약관의 모든 규정을 적용하되, 이 장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이에 따릅니다.

제19조 (용어의 정의)

간접광고 영업대행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다음의 용어는 각 항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① '노출'은 방송프로그램내에서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화면에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 ② '노출횟수'는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시행된 노출의 횟수를 말하며, 이때 1회는 한 회 방송분당 한 장면에서 상표, 로고 등이 노출되었을 때로 정의합니다. 단, 청약사항에 따라 1초 노출 또는 방송프로그램 1회 방송을 노출 1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③ '간접광고 판매의뢰서'는 미디어렐에 간접광고 판매를 의뢰하기 위하여 매체사가 방송프로그램에 간접광고를 노출하고자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노출 가능한 간접광고의 유형, 노출방식 등을 기재한 서류를 말합니다.
- ④ '간접광고 이행의뢰서'는 방송광고 청약자가 판매의뢰서를 토대로 노출품목, 노출방식 등 간접광고 노출에 관한 세부적인 이행사항을 기술한 서류를 말하며 매체사가 수락하면 간접광고의 내용으로 확정됩니다.

제20조 (예고방송, 재방송, 연장방송)

- ① 간접광고로 청약된 방송프로그램이 예고방송된 경우, 그 예고방송에 대해서는 간접광고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 ② 간접광고로 청약된 방송프로그램이 재방송된 경우, 그 재방송에 대해서는 간접광고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 ③ 간접광고로 청약된 방송프로그램이 연장방송된 경우, 연장방송분에 대한 간접광고료 등 간접광고내용은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종전의 청약자가 연장방송분에 대해서도 계속 간접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간접광고 판매의뢰서 통지)

- ① 매체사가 기획하여 방송하는 방송프로그램에 간접광고를 노출하고자 할 때에는 매체사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간접광고 판매의뢰서를 미디어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미디어렐과 매체사의 업무 담당자 간 사전 협의에 의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된 간접광고 판매의뢰서의 내용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매체사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미디어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2조 (간접광고 이행의뢰서의 접수 등)

- ① 미디어렐은 사전 고지된 제작일정에 따라 간접광고 제작에 차질이 없도록 간접광고 청약자로부터 이행의뢰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이행의뢰서는 미디어렐이 내용 확인 후 지체없이 이를 매체

사에 통지합니다.

③미디어랩은 매체사로부터 이행의뢰서에 대한 수정 요청시,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이를 간접광고 청약자에게 통지하고 그로부터 3일 이내에 간접광고 청약자로부터 수정 요청사항에 대한 수락 여부 또는 재협의 사항을 확인 후, 매체사에 수락 여부 및 재작성된 이행의뢰서를 즉시 접수하여야 합니다.

④매체사는 제3항에 따라 통지된 이행의뢰서를 3일 이내에 확정(수락, 거부, 재수정)하여 미디어랩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3조 (간접광고계약 성립)

①본 약관 제22조 각 항에 따라 간접광고 이행의뢰서의 접수, 통지, 수정이 완료되면 매체사, 광고회사, 미디어랩간 간접광고계약이 성립됩니다.

②매체사가 간접광고 이행의뢰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수락한 것으로 보며, 그 때에 간접광고 판매계약이 성립합니다.

③매체사가 간접광고 이행의뢰서 내용대로 간접광고를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미디어랩에 유선 또는 문서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 간접광고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제24조 (계약의 이행)

매체사는 본 약관 제23조에 따라 성립된 간접광고계약의 내용대로 이를 방송하여야 합니다.

제25조 (조기종영)

간접광고로 청약된 방송프로그램이 불가항력이나 공공적, 사회적 필요성 및 매체사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조기 종영될 경우, 간접광고료는 본 방송에서 실제 노출된 횟수에 한하여 청구됩니다.

제26조 (권리귀속)

①미디어랩과 매체사가 간접광고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발하거나 획득한 간접광고물, 노하우, 기술, 설계 등의 모든 권리의 귀속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미디어랩과 매체사는 매체사가 미디어랩에게 제공한 판매의뢰서, 이행의뢰서 수정안과 간접광고물 등으로부터 발생한 법적 문제나 저작권 등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합니다.

제27조 (불완전 방송 또는 불능)

①매체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간접광고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방송이 지체되거나 불

완전 또는 불능으로 된 경우에는 해당 방송분의 간접광고료는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불가항력에 의하여 간접광고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방송이 지체되거나 불완전 또는 불능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성질, 매체사의 간접광고 제작 및 간접광고 청약자와의 협의상황 등을 고려하여 미디어렙과 매체사가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합니다.

제7장 기타

제28조 (상호협력)

①미디어렙은 방송광고 판매와 관련하여 매체사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미디어렙은 매체사에게 방송프로그램의 내용 및 간접광고의 진행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매체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미디어렙과 매체사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협의 및 연락할 업무담당자를 선정하며, 업무담당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통상적인 영업활동의 제반 비용은 미디어렙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나, 미디어렙과 매체사가 합의한 경우에는 매체사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

①미디어렙 또는 매체사는 이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미디어렙이 매체사에 광고료를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익일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지급금액과 관련법(상법등)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연손해금으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매체사는 지연손해금을 감면해 줄 수 있습니다.

③미디어렙의 귀책사유 없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이 취소 또는 변경되어 기 체결된 방송광고 청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방송되지 않거나 지체 또는 불완전하게 방송된 경우에 미디어렙은 이로 인하여 방송광고 청약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이 약관의 이행과 관련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당사자가 제3자로부터 이의제기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당한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이를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하며, 귀책사유가 없는 당사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30조 (계약의 해지)

미디어렙은 매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니다.

- 1.계약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가 허위가 있을 경우
- 2.매체사가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 3.법률에 의거 매체사가 방송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기타 매체사가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제31조 (기타사항)

- ①미디어렙과 매체사는 이 약관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 미디어렙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을 준수하며, 미디어렙은 수입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이 약관상의 의무를 이행합니다.
- ②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약관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 미디어렙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쌍방간 체결된 방송광고판매대행계약서 및 미디어렙과 매체사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관습에 따릅니다.
- ③미디어렙과 매체사는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약관상의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담보제공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 ④방송광고 판매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상대방의 경영 및 일체의 정보를 정보를 본 약관에서 의도하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지 못하며,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에도 기밀을 지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제32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본 약관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4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 당시 방송중인 방송광고물은 이 약관 규정을 적용받는 것으로 봅니다.

방송광고 판매대행 계약서

매체사는 미디어렙으로부터 다음의 방송광고판매대행약관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숙지한 후 약관을 교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인)

- ☐ 총칙 (약관의 목적, 신고, 변경 및 적용 등)
- ☐ 방송광고 판매대행 계약 체결 (계약체결시 첨부서류, 계약기간)
- ☐ 방송광고 (방송광고요금, 지급, 판매방식, 결합판매 등)
- ☐ 방송광고운행 (운행, 운행불일치, 광고소재, 판매현황 송부 등)
- ☐ 광고료, 수탁수수료 정산 및 지급
- ☐ 간접광고에 관한 특례
- ☐ 기타사항 (손해배상, 지연손해금, 계약의 해지, 분쟁해결 등)

주식회사_____ (이하 '미디어렙'이라 함)와 주식회사_____ (이하 '매체사'라 함)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된 미디어렙의 방송광고판매대행약관(이하 '약관'이라 함)에 기초하여 방송광고 판매대행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합니다.

제1조(목적) 미디어렙과 매체사간에 방송광고 판매대행시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적용)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방송광고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3조(수탁수수료) 매체사는 방송광고의 월간 수탁액의 _____를 미디어렙에 수탁수수료로 지급합니다.

제4조(광고료) ① 미디어렙은 당월 판매한 방송광고료를 현금 또는 3개월 이내에 현금화 될 수 있는 은행도어음, 미디어렙이 발행한 어음 또는 결자결제(외담대등)방식으로 익월 말일까지 매체사에 지급합니다. 다만, 현금화가 3개월을 초과하는 결제일 경우 사전에 미디어렙과 매체사가 합의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광고료 지급시 매체사가 미디어렙에 지급하여야 할 수탁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매체사에 입금합니다.

제5조(방송광고소재) 방송광고 소재에 관한 제반사항(소재수령, 심의필 여부, 관련법 준수 여부 등) 확인 및 관련 제 비용은 매체사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6조(간접광고에 대한 특례) 미디어렙과 매체사는 필요할 경우 간접광고에 대해

본 계약서의 특약서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특약서를 우선 적용합니다.

제7조(계약의 해지) 미디어랩은 매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계약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가 허위가 있을 경우
- 2.매체사가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 3.법률에 의거 매체사가 방송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기타 매체사가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제8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고, 각 당사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조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으면 동일한 계약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됩니다.

본 계약서의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후 각 1부씩 보관합니다.

2014년 4월 일

미디어랩

상 호 :

주 소 :

대표이사 : (인)

매 체 사

상 호 :

주 소 :

대표이사 : (인)